

「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정원,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고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명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
 - 위원 수 : (당초) 7명 이내 → (변경) 10명 이내
 - 부위원장 : (당초) 담당국장 → (변경) 담당과장
 - 민간위원의 수 : (당초) 3명 이상 → (변경) 6명 이내
-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개정 (안 제3조)
-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(안 제4조의2)
-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
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' 23.6.11.)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명위원회의 정원, 구성 기준 변경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